

##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조 소 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 국문 초록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였다. 언론중재절차 입법과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더 다양해졌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서 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

\* sylex@pusan.ac.kr

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왔다고 할 만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근거인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 이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피해규정에 대한 위헌논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함에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권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헌주장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제도 규정(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정권고, 조정과 중재)과 그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 등을 통해 해당 규정과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선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조정 및 중재절차, 시정권고제도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언론중재법의 등장과 위헌 논의
- III. 정정보도청구권
  - 1.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 2. 정정보도청구 거부 사유
- IV. 반론보도청구권
  - 1. 연혁
  - 2.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 3. 추후보도청구권
- V. 손해배상청구
  - 1. 규정 내용
  - 2. 위헌 논의
  - 3.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 VI. 이른바 금지청구권
  - 1. 규정내용
  - 2. 관련 판례
- VII. 권리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 1. 조정
  - 2. 중재
  - 3.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통계
  - 4. 소송
- VIII. 시정권고
- IX.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식주는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명예’다. 명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로 풀이 된다<sup>1)</sup>. 오랜 시간

1)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참조. 혹은 ‘자기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정치적 생활의 목적으로 삼았었고, 스토아 학파에서도 건강·부(富)와 더불어 명예를 지고선(至高善)으로 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명예라는 가치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함께 가야 하는 가치였고 세상과 유리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 때로는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근세 시민 생활의 발전역사에서 명예라는 가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한 사람의 인격 존엄에 관한 중요한 덕목(德目)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늘 법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법이 보호하는 ‘명예’의 의미는 상술한 사전적 의미나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그 의미보다 협의적이다. 사람이 천부적으로 보유하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인 내적 명예나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 감정인 명예감정은 법제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기본권인 명예권<sup>2)</sup>이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sup>3)</sup>으로 해석된다.

한편 명예권의 보호 법제는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로 보호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와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과 사생

---

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2)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판례집> 11-1, 768, 774; 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판례집> 20-2하, 509, 518.

3)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판례집> 17-2, 311, 319; 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판례집> 20-2하, 509, 518.

활의 비밀 보호와의 상호관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헌법에서 말하는 명예는 형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sup>5)</sup>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의 특칙)을 두고 있고,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에 새로운 변화가 등장했다. 소송이 아닌 형태의 제도를 디자인한 언론중재절차의 입법과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분이 아닌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이르기까지 현행 법상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다양하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sup>6)</sup>.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구제를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제도의

4) 허영 (2021). <한국헌법론>. 박영사, 624-625. 따라서 헌법이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가 되지만, 명예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그 해석지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언론매체의 명예 훼손적 표현에 관련된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공인성이나 사안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해석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판례집> 11-1, 768, 777).

5)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사건에서, 민법 제7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으로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 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판례집> 3, 149, 157-158).

6) 언론피해구제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이재진 (2015). 언론법과 피해구제제도의 변화. <관훈저널>, 통권136호, 52-58 ; 문재완 외 (2017).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85-214;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제6장; 김옥조 (2006).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제10장 등 참조.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sup>7)</sup>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 왔다고 할 만하다<sup>8)</sup>. 이 글에서 명예훼손과 피해구제제도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 II. 언론중재법의 등장과 위헌 논의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2005년 개혁 입법으로 등장한 입법 중의 하나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9)</sup>이었다. 동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 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

7) 해석상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인정되었지만, 해당 법률규정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었다.

8)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65.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제정이유로 했다<sup>10)</sup>. 동법에 규정된 피해구제제도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언론사와의 접촉 전이나 언론사와 협의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 사건을 포함한 조정이나 중재 신청 인정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는 위헌소원이 제기되었다<sup>11)</sup>. 이 사건에서 위헌을 주장했던 청구인측은 ①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규정과 정정보도청구권이 배제되는 사유로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해 적용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불법행위법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위법성 요건을 전혀 배제하였다는 점 등에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처분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언론사는 물론 피해자의 대심적 변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인격권침해에 대하여 언론사의 귀책사유로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을 허용하는 한 위헌이고, 징벌적 손해를 의미하게 될 정도의 고액의 배상을 인용하는 등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통상 중재판정의 경우 인정되는 취소의 소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의적 헌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권립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위헌주장의 이유를 제시했다<sup>12)</sup>. 또한 동

10)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6565&lsId=&efYd=20050728&chrClsCd=010202&urlMode=lsEf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1)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조항들의 위헌성을 이유로 위헌제청을 했던 제청법원도, ①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에 기인한 보도인지의 여부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언론기관에게 과도한 사실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언론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②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정보도청구권 중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인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님”에 관한 입증이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소명만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됨으로써 언론사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하지 않아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제청의 이유를 밝혔다<sup>13)</sup>.

한편 동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 및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관광부장관 및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은 ①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헌법적 근거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구분<sup>14)</sup>될 뿐이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이나 배제사유에 관해 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신속한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치분 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② 언론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고의나 중

12)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3-475[이외에도 청구인측은 당시 언론중재법상의 다른 규정인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 인격권 보장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조항(인적 구성, 기능 및 관할), 고충처리인 조항, 소급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청구를 하였다.]

13) 이 사건은 병합사건이었고, 이는 ‘2006헌가3’ 위헌법률심판사건에 청구된 제청법원의 위헌이유였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6).

14) 언론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언론보도의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할 것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정정보도청구권), 아니면 자신들의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칠 것인지(반론보도청구권)의 양적 구분이라고 보았다.

과실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언론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만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도 중전 법원의 실무상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③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청구 등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소송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내리는 시정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칠 뿐,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다<sup>15)</sup>. 또한 법무부장관도 ①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시정권고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마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중재법 해석상 언론중재 결정에 대하여도 중재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법 규정을 용인하면서 사법절차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할 것을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법권에 의한 구제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반론권 보장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언론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한 특별한 권리로서, 청구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 기간을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한 점, 정정보도 내용이 원래의 보도내용을 초과할 수 없고 사실적 진실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언론의

15)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9-481.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신속성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정정보도등청구 사건심판규칙이 당사자의 변론참여권과 대심적 구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규정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배상액 산정 규정도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한 것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합헌의견을 제시했었다<sup>16)</sup>.

그러나 정작 동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 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술한 위헌논의들에 대한 유권적 판단은 없었다<sup>17)</sup>.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보았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책이며, 청구권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을 볼 때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인정·제소기간의 단기간 제한·정정보도 방법도 원래의 보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은 등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이는 재판관들의 전원일치의견이었다<sup>18)</sup>. 반면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소송 그 자체가 본안소송인데 승패의 판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 입증에

1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84-485.

17)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341.

1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고 보아 위헌임을 인정했다<sup>19)</sup>.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정보도청구 소송 관련 규정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정보도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 규명을 비롯한 위헌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의들<sup>20)</sup>이 존재한다. 때문에 현행법상의 제도규정과 그 규정 해석을 통해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보여준 판례,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적용례 등을 통해 규정과 현실을 살펴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언론중재법상의 피해(명예권 중심)구제제도 규정과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Ⅲ. 정정보도청구권

#### 1.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불가)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2005년 법 제정 당시

19)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4-407.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 결정에서의 언론의 위축효과에 관한 분석적 설명으로는, 양재규 (2006).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통권100호), 9-18.

20) 박용상, 앞의 책, 1026-1029.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법 개정에서 확대되었을 뿐이다<sup>21)</sup>.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한 배경적 상황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해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동일한 보도매체를 통해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에 의하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된 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의 원인이 된 언론보도 등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sup>22)</sup>. 그러나 이 개념이 늘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21)

언론중재법[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언론중재법[시행 2009. 8. 7.]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09년 법 개정 당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법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의 언론보도의 의미를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확대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확대규정된 것이다.

서,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해당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즉 법원은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들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왔다<sup>23)</sup>.

다음으로는 그 보도내용이 허위여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sup>24)</sup>.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 바 있다<sup>25)</sup>.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까지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을

22) 전광백 (2012).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149.

2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2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2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등.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sup>26)</sup>. 즉 법원은 명예 훼손적 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해 왔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으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은 진실성 판단에서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했다<sup>28)</sup>.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입법당시부터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권리로 위험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

2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2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등. 한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 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룰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과학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고려했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권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해석했다<sup>29)</sup>.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하나의 입장으로 둔 채 반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sup>30)</sup>,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sup>31)</sup> 등이 논의되어 왔다<sup>32)</sup>.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 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sup>33)</sup>이라는 점에서 보면,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미 행해진 허위보도를 진실에 부합하게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바 정정보도청구의 소제기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나 불법행위성의 전제적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제소기간이 민법상의 권리보다 단기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64조 특칙 규정의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구분되는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즉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구체적 형

29)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30) 김재협 (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15년 봄호(통권 94호), 86-90; 김재협 (201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04호), 88 이하.

31) 김윤정 (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00호), 27-28.

32) 조소영 (2006).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192-194; 이수중 (201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121호), 87; 박용상, 앞의 책, 1026-1029.

3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34) 이동훈(201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100.

태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기한 청구권이라면, 허위의 신문보도로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도한 자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인 것이다<sup>35)</sup>.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에는 언론사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언론보도의 파급적 효과를 감안한 허위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을 주된 목적으로 두었다는 점을 우선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다층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고자 한 입법 목적을 상기한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의 새로운 권리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 인정으로 보호되는 명예의 보호범위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명예권의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적 기능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를 전제로 해야 하고, 따라서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

<sup>35)</sup>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다<sup>36)</sup>.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판례는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증명의 용이성과 관련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의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37)</sup>.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학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써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그 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

3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37)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증명을 다 한 것으로 판단했다<sup>38)</sup>.

## 2. 정정보도청구 거부 사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은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사유의 존재는 2006년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권이 위헌이 아님을 결론 내린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방법을 볼 때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보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적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sup>39)</sup>.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둘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셋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넷째,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 내용에 관하여 원 보도를 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3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구자현 (2011).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694.

39)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원 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정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sup>40)</sup>. 또한 충분한 정정보도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기준이 되어 왔다. 그래서 법원은 그 후속 정정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sup>41)</sup>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sup>42)</sup>.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 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 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 청구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sup>43)</sup>.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제4호의 거부사유는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청구에 의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고, 제5호에 규정

4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41) 보도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방법, 원 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구자현, 앞의 글, 690].

4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4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 기관의 공개회의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는 법률로 공개가 규정된 경우와 기관 스스로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도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이런 제한된 보도 자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부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sup>44)</sup>. 다만 법원은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제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 형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하지 않았다<sup>45)</sup>. 한편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언론사 등의 정정보도 거부사유는 2005년 입법 이후 2011년 법 개정으로 문구가 수정된 부분 중, 제2호의 사유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2011년 법 개정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을 이유로 들었다<sup>46)</sup>.

2011년 개정 전 언론중재법 규정	2011년 개정 후 언론중재법 규정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그런데 동 조문의 문구의 의미가 단순히 용어를 쉽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고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어적으로도 ‘반(反)하다’와 ‘다르다’가 포섭하는 범위와 경우가 같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사실과 반대되는 경우와 그 사실과 다른 경우

44) 전광백, 앞의 글, 151-152.

4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이 판결은 현행 언론중재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했던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46)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236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의 인정 범위는 늘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가 든다. 간과된 사항이 아니었다면 보도의 자유와 명예권 등의 인격권의 권리충돌적 상황을 조화롭게 규정하고자 했던 규범 조화적 해석으로, 명예권을 보호하면서도 언론사 등의 보도매체들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사유를 좀 더 넓혀줌으로써 보도의 자유 또한 더 보호하고자 했던 개정취지를 배경으로 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언론사 등이 그 청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정정보도 청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IV. 반론보도청구권

### 1. 연혁

현행 언론중재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은 1980년 언론기본법상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하의 규정으로 처음 도입된 권리로서, 이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방송법 제41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용어 때문에 동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 초기부터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1986년의 대법원 판결<sup>47)</sup>과 199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sup>48)</sup>에 따라 ‘반론권’으로 정리되면서 1995년 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47)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48)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5-528.

등에 관한 법률<sup>49)</sup> 제16조에서 비로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 반론권 규정이 최초로 입법된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출판법 제11조 규정의 반론권 내용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sup>50)</sup>도 이 권리의 성격에 관한 해석에 상황적 배경으로 언급될 만하다.

대법원은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되었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sup>51)</sup>. 언론기본법 폐지 후 피해구제 규정들은 매체별 입법으로 분산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된 대상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간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49)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6. 7. 1.,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50)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3.

51) 또한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함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이 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고, 언론사 측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 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sup>52)</sup>. 이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해석이 내려진 이후 법률개정과정을 거쳐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자리매김한 동 권리가 현행 언론중재법 제16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신문보도에 의해 자신의 명성을 침해받은 자의 개인적 권리로 ‘반론권(droit de réponse)’을 인정할 것을 처음 제안했던 뉘로르(Jacques-Antoine Dulaure) 의원이 제안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첫째, 언론에 대한 개인의 보호, 둘째,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로부터의 독자의 보호, 셋째, 언론과 개인 간의 무기평등, 넷째, 형사상 소추에 기한 해결의 불충분성이었다고 한다<sup>53)</sup>. 제한적이긴 하지만 매스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용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한다는 점과 언론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론권 제도의 존재 의의를 파악하는 견해<sup>54)</sup>도 뉘로르 의원의 제안이유와 상통하는 맥락을 보인다. 현재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이러한 의미를 잘 실현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지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된다.

## 2.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현행 언론중재법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

52) 현재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판례집> 3, 518, 525-526.

53)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0.

54) 박용상, 앞의 책, 1064.

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처럼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청구의 대상이 사실보도에 국한되고,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의 유무도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로 설명된다<sup>55)</sup>. 언론기본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판결<sup>56)</sup>에서,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에게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도이고, 언론사 측에게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고, 이러한 풀이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sup>57)</sup>, 법원은 소송에서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58)</sup>고 했다. 그리고 실제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는, 반

55) 박용상, 앞의 책, 1065-1067.

5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5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sup>59)</sup>.

‘언론보도 등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았다<sup>60)</sup>.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확장이론의 주장<sup>61)</sup>과 관련 판례가 있었다.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sup>62)</sup>에서 대법원은,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해야 할 공익이 있으므로 국가 등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했던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sup>63)</sup> 제16조 제7항이 민사소송법 등의 일반 이론상으로는 당사

58) 반론보도등청구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3항

5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60)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32728 판결.

61) 박용상, 앞의 책, 1068-1072.

6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63) 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본질인 인격권 보장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사자능력을 부여할 합리성과 정당성이 긍정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현행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를 때, 법령 등에 의해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을 가진 관서나 관청,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단체 등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sup>64)</sup>이기 때문이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sup>65)</sup>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sup>66)</sup>.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도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 있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로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sup>67)</sup>. 따라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반론제도의 취지상,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6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6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66)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6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sup>68)</sup>.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 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음을 판시해 왔다<sup>69)</sup>.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sup>70)</sup>.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되므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을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했다<sup>71)</sup>.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도 추상적이며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의 보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

6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6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7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7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했다<sup>72)</sup>.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으며,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sup>73)</sup>.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것처럼,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sup>74)</sup>에서, 대법원은 ①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②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할지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허위성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재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

7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7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7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직접 언론사 등을 상대로 행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중재 전치주의를 적용해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했었지만, 언론중재법에서는 권리행사 기간 이내에는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 3. 추후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1987년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sup>75)</sup>에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권리로 처음 도입되었다(동법 제20조). 이후 1995년 법 개정<sup>76)</sup>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로 변경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뒤 언론중재법<sup>77)</sup>에서 권리 행사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에서 3월로 연장하면서 현행법 규정에 이르렀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17조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75)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76)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1996. 7. 1.,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77) 언론중재법(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추후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된다<sup>78)</sup>.

추후보도청구권은 이와 같이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나 행정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의 보도의 경우 등에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요건충족이 되므로, 구체적인 형사상 조치가 행해지기 이전이라도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란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와 기소 후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즉 추후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범죄혐의 시점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 내지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있고 해당 단계가 종결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혐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 등의 처분이나 사건종결이라고 볼 수 없는 기소중지 처분, 무죄증거와 무관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식적 사유에 해당하여 결정된 법원의 면소판결·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결정은 추후보도청구의 사유라고 할 수 없다<sup>79)</sup>. 한편 보도된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무죄선고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78) 박용상, 앞의 책, 1172.

79) 법원의 면소판결·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결정의 경우는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심판 사유 마다 인정 필요성이나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박용상, 앞의 책, 1174).

## V. 손해배상청구

### 1. 규정 내용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권의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인 제750조 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의 이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구조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발생요건에 대한 규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명예훼손인 경우는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sup>80)</sup>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산정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논란이 적잖다. 이러한 사

80) 양삼승 (1993).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1993년 가을호. [전자매체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8&idx=537&sub\\_idx=4120&m=read&f=&s=](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8&idx=537&sub_idx=4120&m=read&f=&s=)

실적 어려움과 실제 산정된 배상액수, 효과의 면에서의 실효성 등의 논란은 요즈음 입법안으로 발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sup>81)</sup>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은 손해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나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이라는 점이다<sup>82)</sup>.

## 2. 위헌 논의

2005년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대해서 위헌소원을 청구했던 청구인 측에서는, 동 규정이 인격권침해에 대하여 언론사의 귀책사유로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을 허용하는 한 위헌이고, 징벌적 손해를 의미하게 될 정도의 고액의 배상을 인용하는 등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이유를 제출했다<sup>83)</sup>. 청구인측이 주장한 위헌이유에 의하면 결국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자체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과실책임주의를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법제에서 정리된 과실론은 객관적 과실설의 입장이 통설적 입장이어서, 법률상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되는 구조다. 객관적 과실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81) 언론중재법개정안으로는 2020년 정청래의원안, 2021년 최강욱의원안 등이 있다.

82) 이승선 (202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 이종처 발·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신문과 방송>, 3월호, 커버스토리 11.

83)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3-475.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sup>84)</sup>. 즉 언론사의 경우에는 보도직업에 종사하는 언론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중과실이 요건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규정의 경우와 같이 형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특별한 법익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제한된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 성립요건 자체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서 규정해야 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 제3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규정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공익보도의무와 신속보도의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완화방법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성립요건의 차원이 아니라 형법상의 구조처럼 위법성 조각을 위한 ‘공익성과 진실 또는 상당성의 증명’ 문제로 다루거나<sup>85)</sup>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765조<sup>86)</sup>는 배상액의 경감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 규

8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85) 손해배상액에 관한 분쟁을 다룬 판결들에서 대법원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도 수용해 오고 있다. 즉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김재형 (2009).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인권과 정의>, 제39호, 98.

86)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정에 의하면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을 번복한 결정<sup>87)</sup>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었던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실화의 경우에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그 실화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실화피해가 모두 피해자의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결과에가 위헌논의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즉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원칙과 달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였고,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했던 것이었다. 실제 화재 피해 확대원인들은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실화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그 화재 및 연소로 인한 피해를 모두 실화자에게 배상시키면, 실화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기 쉽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입법자가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실화자의 부담을 구제하는 방법은 경과실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이 실화피해자의 보호라는

87)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판례집> 19-2, 203, 203-214.

면에서 보면 실화 및 연소의 피해에 대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실화 및 연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부 실화자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의 이유로 판시하였다<sup>88)</sup>.

결론적으로 언론중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위헌 주장의 논지에 대해서 살펴건대, 손해배상책임을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자는 것은 언론사 등을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위헌성을 담게 되는 위헌적 논의가 될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실화책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상기해 볼 수 있는 유사한 경우가 된다고 하겠다.

### 3.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언론중재법 규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명예권 침해 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문제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예훼손사건에서의 손해배상은 명예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배상이다.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곤란한 부분이어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명확한 산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

<sup>88)</sup>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판례집> 19-2, 203, 209-211.

어 왔다<sup>89)</sup>. 실제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sup>90)</sup>. 이렇다보니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게 되곤 했던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사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기도 했다<sup>91)</sup>.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적 기능’이 주된 것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sup>92)</sup>.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이러한 위자료의 본질적 기능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해 왔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

89) 김재형, 앞의 글, 103.

9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9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92) 노만경 (2011).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통권 121호), 11.

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sup>93)</sup>. 그러나 한편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피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sup>94)</sup>,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sup>95)</sup>.

위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보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① 불법행위인 언론보도의 내용, ② 피해자 측 사정, ③ 가해자 측 사정, ④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sup>96)</sup>.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①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매체의 종류(신문인지 방송인지 등),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 여부, 공익성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주간·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성의 정도 ② 피해자 측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인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③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이후의 태도 ④ 보도 이후의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와 판결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수 있다고 한다<sup>97)</sup>.

9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9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등.

9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96) 허만 (2000).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120.

97) 노만경, 앞의 글, 12.

## VI. 이른바 금지청구권

### 1. 규정내용

언론중재법 제30조 3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 피해자는 침해정지나 침해예방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입법 이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하급심법원들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했었고<sup>98)</sup>, 대법원은 1996년에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전구제수단으로 광고중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대해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 있다<sup>99)</sup>. 하지만 인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의 인정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던 바, 2005년 언론중재법에서의 규정도입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일종인 보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반성 여부가 문제제기 되기도 했다.

종래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와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가 나뉘었고, 가장 큰 구분의 실익은 행사요건 상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가의 여부였다<sup>100)</sup>.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규정을 보면, 제30조 손해배상

98)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4. 선고 87카53922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2. 27. 선고 87카36203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6. 20. 선고 88카28987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16. 선고 92카44613 등.

9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규정을 앞에 두고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바대로라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이른바 금지청구권(침해정지청구권과 침해예방청구권)은 명예권 등 인격권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른바 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추가적 장치로서 규정된 것이 제4항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이다. 그리고 이 규정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청구권이 ‘기사삭제청구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지청구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다.

## 2. 관련 판례

언론보도 등의 금지청구권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sup>101)</sup>. 따라서 언론중재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은 사후적 규제이기 때문에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는 구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을 근거로 하여 방영금지가처

100) 전광백, 앞의 글, 137-138; 김재형, 앞의 글, 103-104.

101) 헌재 1996. 10. 4. 93헌가13 결정 등 <판례집> 8-2, 212, 224.

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심사했던 사건<sup>102)</sup>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즉 검열의 주체가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의 과잉적 제한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 정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의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sup>103)</sup>.

대법원도 금지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와 관련된 1996년 판결에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실시했다. 판례에 의하면<sup>104)</sup>, 인격권은 성질 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특히 명예권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

102)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결정 <판례집> 13-2, 229.

103)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결정 <판례집> 13-2, 229, 233-236.

10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sup>105)</sup>. 하지만 동시에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제도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관해서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지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sup>106)</sup>.

한편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sup>107)</sup>.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기사보도로 자신

10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판결.

106)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108)</sup>. 기사삭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의 일부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원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이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sup>109)</sup>.

기사삭제청구권은 그 자체로 기사 자체의 잘못을 확인해 주거나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파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원보도가 삭제되는 것을 실제로 더 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명예권 등의 인격권에 대한 향후 침해요소의 근원을 제거하는 적극적 권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10)</sup>.

## VII. 권리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한 경우, 언론사 등이 그 청구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절차와 법원에의 정정보도청구소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1. 조정

먼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

10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0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10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10) 양철환 (2014),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하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통권 제132호), 51.

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제23조)<sup>111)</sup>.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경과 전)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2005년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종래보다 조정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이를 소명(疏明)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棄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

111)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에 정하여 그에 의한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10항).

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조사 실행의 필요성은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 확보 절차라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각하(却下) 결정을 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 기각결정을 하며,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 결정을 한다. 그 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

그리고 위의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조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신청 요건〉<sup>112)</sup>

신청인	조정대상매체	신청기간
- 개인, 일반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 -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언론보도등에서 언급되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 필요)	- 신문 - 방송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 신문 -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무혐의나 무죄로 행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상 권리관계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을 대신하여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제3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조정과 중재는 유사성을 지닌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즉 중재도 제3자가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지만, 제3자의 판정에 당사자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sup>113)</sup>.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피해구제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가해자의 형사

112) URL: <https://www.pac.or.kr/kor/pages/?p=55>

113) 홍승희 (2009). 명예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10-11.

처벌을 통한 심리적 만족에 그치게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sup>114)</sup>. 이러한 실익적 의미에서 분쟁해결방안과 관련된 현대의 추세는 대체적 해결방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일찍부터 ‘중재제도’를 운영해온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만 하다. 중재제도는 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이나 시간적 손실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중국적으로 마무리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피신청인에게는 조속한 분쟁해결로 보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분쟁해결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sup>115)</sup>.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제25조). 이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는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했던 청구인은 당시 언론중재법 조항 중 중재관련 규정에 대하여,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통상 중재판정의 경우 인정되는

114) 박정난 (2020).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봄호(제66호), 153.

115)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64.

취소의 소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sup>116)</sup>. 당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적법요건이 미비되었음을 이유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재는 당사자 간 최종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중재합의가 없었다거나 중재인 선정 등 기타 중재절차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반영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 신설의 경우로서,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 사이였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것이 그것이다<sup>117)</sup>.

### 3.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통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중재법상의 조정 및 중재절차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의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된 1981년 이래로 2020년까지의 사건처리현황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다<sup>118)</sup>.

그동안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40년간 신청된 총 건수 64,759건 중에 15,153건(23.4%)이 '조정성립'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2,783건의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 1,622건

11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3-475.

117)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1581&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118)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bn=2769&m=read&nPage=1&cate=PD01&f=TITLE&s=](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bn=2769&m=read&nPage=1&cate=PD01&f=TITLE&s=)

(58.2%)은 동의되었고, 1,161건(41.7%)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되었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총 8,634건(13.3%)으로 조정성립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구제율은 7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정절차를 통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인정될 만 하다.

반면에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시작된 중재절차는 첫해인 2005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09년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청구건수가 100건을 넘었던 해는 2009년(111건), 2011년(113건), 2013년(190건)이었고,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급속히 줄어들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신청건수가 1건도 없었다.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현상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40년간의 총 신청건수의 침해유형으로 보면, 조정사건의 경우 총 64,759건 중에 명예훼손 유형이 61,377건(9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1,290건(2.0%), 신용훼손 877건(1.4%), 프라이버시 침해 373건(0.6%) 등의 순서였다.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총 634건 중에 명예훼손 유형이 587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상권 침해 34건(5.4%), 프라이버시 침해 4건(0.6%), 재산상 손해 4건(0.6%) 등의 순서였다.

#### 4. 소송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이 소송제기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sup>119)</sup>. 언론중

재법 제정 당시에는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2006년 헌법재판소가 신문사업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sup>120)</sup>, 2009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본안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언론중재법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27조).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28조는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언론사 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 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 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 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

119)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0)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관례집> 18-1하, 337, 404-407.

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제30조에 의하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재판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제31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법원에 대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모든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제29조).

## VIII. 시정권고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의 보도를 심의하고,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고지하여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다<sup>121)</sup>.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부터도 정기간행물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성폭력 피해자,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목격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사생활 침해 내용 ▲마약의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의 상세보도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

121) 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7.

세묘사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한다<sup>122)</sup>. 그런데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시정권고 기능을 더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비하여, 개인적 법익사항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 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에도 각 개별법에서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추가한 것이었다<sup>123)</sup>.

2005년 언론중재법 제32조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원이 제기되었는데, 청구인측은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의적 헌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권립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sup>124)</sup>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32조의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시정권고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sup>125)</sup>. 적법요건 결여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시정권고제도의 강화규정들이 위헌성을 지녔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제도의 효력이 권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122)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65.

123)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3.

124)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4-407.

125)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341.

내용에 대한 이익집단의 시정권고 신청남발 우려의 시각들이 있었다<sup>126)</sup>. 즉 시정권고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언론의 자유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의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공표에 의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되고,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었던 것이다<sup>127)</sup>. 이후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하였고, 현행 언론중재법까지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 남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삭제된 이 개정법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되었다<sup>128)</sup>.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 등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언론 형성 및 언론의 공

126)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65.

127)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3.

128)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4(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 조항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아 액세스(access)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세스(access)권은 그 주체, 객체, 내용 등,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실질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지 않아 당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제3자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간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심의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공정한 언론보도나 언론의 공적책임을 폭넓게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언론사 등의 보도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신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언론사 등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시정권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언론사 등에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시정요구나 참여의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청원법 제3조, 제4조),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언론중재법 제6조, 방송법 제35조). 그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동 조항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아닌 사람에게 시정권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언하였다<sup>129)</sup>.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위원회 구성 이래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인적 법익<sup>130)</sup>·사회적 법익<sup>131)</sup>·국가적 법익<sup>132)</sup>에 관하여 심의한다. 현행 시정권고제도에 대해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 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익침해가 분명한 보도에 한해 시정권고

129)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4-65.

130)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공익신고자·부패행위신고자·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단순 고소·고발사건 보도금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금지 등(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8)

131) 보도윤리 준수, 인종·국적·지역·성별·종교·나이·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차별표현 금지, 재난보도 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격권 보호,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금지,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금지, 자살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 금지, 마약류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충격 및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보도 금지,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 기사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극적인 제목 사용 금지 등(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8)

132)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금지, 국가기밀 누설 금지 등(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8)

를 하도록 운영한다면 제도의 기능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IX. 맺는 말

헌법상의 모든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원칙이므로, 명예권도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헌법상의 명예권 보호는 보호대상으로서의 명예의 개념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침해된 명예권을 어떻게 구제받도록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망라하는 구조와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이론상 헌법규정이 사인 간에 직접적 효력을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통설적으로 간접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바, 개인의 명예 보호는 헌법이 직접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과 형법상의 일련의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을 두어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로서 언론중재법이 도입되었고, 소송이 아닌 구제제도로 언론중재절차와 새로운 권리들을 제도화했다. 특히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새로운 피해구제제도들은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구조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구제방법에 관한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다만 언론중재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인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의 조화는 각 구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엄격한 위헌성 심사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위헌성 시비는 새로운 권리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적 제한성 여부,

제도의 미비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위헌심사를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각 구제제도의 성립요건과 효과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내용은 법원의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다. 때문에 언론중재법상의 각 구제제도들은 규정 그 자체는 물론이고 관련된 판례에서의 주요한 내용들까지 정리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구제를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명예권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명예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 제도가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수단들이다. 그리고 그 제도적용의 과정에서 언론사와 그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간의 조화적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활동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본연적 기능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기술이 바뀌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빠르게 만들어 내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언론보도매체의 변화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결국 언론보도매체 환경의 변화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과 정도도 변화하게 만들게 된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명예훼손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인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도 형사조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등, 단순히 정보통신망 이용 시의 문제로만 분류해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언론의 문제들과 표현의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한 태양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정채해서는 안 되는 살아 있는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무엇이 명예인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젠 무엇이 언론인가를 다시 고민하면서, 발생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권을 지켜주는 보루로서의 구제책을 법률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김옥조 (2006).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재완 외 (2017). <미디어와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정난 (202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신건호 (2005).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
- 신 평 (2004). <명예훼손법>. 서울: 청림출판
- 안상운 (201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 허 영 (2021).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9).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전자자료] URL: [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idx=865&field=pdf\\_nm](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idx=865&field=pdf_nm)

### <논문>

- 강병국 (2005).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 언론피해구제법 해설. <신문과 방송>, 통권 410호.
- 구자현 (2011).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정의로운 사법: 이 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 김윤정 (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통권 100호).
- 김정현 (2010).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3권 3호.
- 김재협 (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05년 봄호(통권 94호).
- \_\_\_\_\_ (200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통권 104호).
- 김재형 (2009).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

- 차. <인권과 정의>, 제399호.
- 노만경 (2011).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통권121호).
- 박아란 (2019) 언론 자유와 기사삭제 청구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미디어 이슈>, 5권 5호. [전자자료] URL: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92&contents\\_id=000344023AB2E88D602442D75B5599A6](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92&contents_id=000344023AB2E88D602442D75B5599A6)
- 박정난 (2020).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봄호(통권 제66호).
- 양삼승 (1993).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자료]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9&idx=537&sub\\_idx=4120&m=read&f=&s=](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9&idx=537&sub_idx=4120&m=read&f=&s=)
- 양재규 (2006). 언론중재법 관련 현재결정(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통권100호).
- 양철한 (2014).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하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통권 132호).
- 오영권·김명섭 (1998). 반론권의 예외사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언론중재>, 1998년 가을호(통권 68호).
- 원혜욱·김자영 (2016).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비교형사법연구>, 18권 4호.
- 이동훈 (201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 이승선 (202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 이중처벌·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신문과 방송>, 2021년 3월호, 커버스토리 11.
-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 이수중 (201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통권 121호)
- 이재진 (2011). 주요 국가의 언론피해 구제방식 비교 고찰. <언론중재>, 봄호(통권 118호).

- 이재진·상윤모 (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방송연구>, 2008년 여름호(통권 제66호).
- 장호순 (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통권 88호).
- 전광백 (2012).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 전찬희·지용수 (2012).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 조소영 (2006).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 허 만 (2000).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 홍승희 (2009). 명예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 ■ ABSTRACT

---

### Legislation and the reality of damage relief based on defamation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Cho, So Young

Professor, Law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honor” protected by the right to honor, included in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ocial evaluation” of a person or his or her personality, that is, objective and external valuation. The legal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 to honor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which cover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s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21. At the same time, it explici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as a specific limit that cannot be overcome by press freedom.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his freedom, “honor” can be viewed as a broader concept than the “protection of honor” under criminal law. Moreover, the scope of defamation punishable by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onor may be different.

Next, there are 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which are generally corporations that specify the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What was newly introduced here were the damage relief legislations in case of defamations caused by media report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press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right to

claim a report as a new righ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s for relieving media damage, including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defama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with each system having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Therefore, a person who was harmed by media reports can choose a remedy that considers each system's requirements and effects. In terms of these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an be quickly and easily remedied at a low cost. Moreover, various right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have been established as new options for victims because these rights are incorporated into each requir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Basic Media Act in 1981, the Press Arbitration Act underwent 3 revisions follow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enactment of the media damage relief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Arbitration Act has continued to show improvement, centering 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role. Therefore, this article on defamation and damage relief mainly discusses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at i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study's purpose is to summarize the unconstitutional discussions about the damage regulations that were not judged in the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all provisions except for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request for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iting that they lack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lack of directness. This decision was reached because the claim of

unconstitutionality was not subject to judg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urrent Press Arbitration Law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right to request further reporting, right to claim suspension of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application proces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ealit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etc.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ggest a starting point for a discussion about improvements for the future.

Keywords: Press Arbitration Act,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Correction Recommendation System

[ 논문투고일 2021. 6. 21.    논문수정일 2021. 7. 25.    게재확정일 2021. 7. 27. ]